

◎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공고 제2026-68호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6년 06월 16일

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장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6. 6. 16. ~ 2026. 6. 29.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김명진	71.○.05.	0145250277680001499	4,492,500 원	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52 번길 ○
2	김만경	86.○.13.	0145250277680002186	19,116,000 원	광주광역시 서구 화운로 155 번길 ○
3	이성진	68.○.20.	0145250277680002202	2,510,640 원	전라남도 여수시 웅천로 ○
4	권대홍	57.○.08.	0145250277680002187	1,280,000 원	광주광역시 북구 근왕로 207 번길 ○
5	문대중	90.○.31.	0145260277680000401	3,862,500 원	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230 번길 ○
6	유한책임회사 지앤지코리아	200115- 0000899	0145250277680000909	4,357,500 원	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 72 번길 ○
7	최갑수	80.○.26.	0145260277680000512	400,000 원	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67 번길 ○
8	최갑수	80.○.26.	0145260277680000528	1,367,200 원	광주광역시 광산구 선운중앙로 67 번길 ○
9	이재귀	82.○.14.	0145250277680002745	22,302,000 원	광주광역시 광산구 복련로 2 번길 ○
10	구재규	81.○.25.	0145250277680002185	5,684,000 원	광주광역시 서구 상일로 14 번길 ○
11	이중수	53.○.16.	0145250277680000574	3,241,740 원	광주광역시 북구 월동로 ○
12	송지나	87.○.25.	0145260277680000392	18,540,000 원	광주광역시 동구 중앙로 ○
13	주식회사 러브지나	200111- 0738290	0145250277680006339	3,862,500 원	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65 길 13-10

4. 문의: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 광주분소 (광주 서구 회재로 905 시청자미디어센터 4층 ☎ 062-457-1594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
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